

特別企劃人인증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本으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 5 回 ◎

한 最初 表示의 保護 및 不正競爭行爲에 對한 保護에 관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 (v) 消費者 保護; 特別한 法律이 없다.
- (vi) 現行 國內法의 改正; 情報가 없음
- (b) 條約 加入
 - (i) 國際的條約
 - WIPO (1980年) 加入
 - 工業所有權 保護을 위한 파리協約, 리스본 決議(1965年)(實務規定에 관한) 및 스톡홀름 決議(1980年)(管理規定에 관한)에 加入
 - 特許節次의 目的上 미생물 기탁 國際的 認定에 관한 부다페스트 條約加入(1981年)
 - (ii) 雙方間條約; 情報 없음
- (c) 特許 및 發明保護를 위한 其他 名稱들의 主要 規定
 - (i) 名稱
 - 發明 特許 (法第165號 7, 18 및 19條; 規則 30案)
 - 實用新案 特許(法第165號, 55條; 規則 133條)
 - (ii) 保護를 받기 위한 要件
 - 新規性: 發明特許에 關하여 一般的의 新規性 基準이 適用된다. 어떤 發明이 特許出願前에 菲律賓에서 公知되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使用되어진 것일 경우 또는 出願前에 菲律賓에서, 또는 外國에서는 1年以上前에 特許를 받았거나 油印된 公報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特許出願前 1年以上 菲律賓에서 使用 또는 販賣되었을 경우, 또는 菲律賓에서 特許出願前에 그보다 앞서 出願하여 발급받은 特許와 同一한 内容일 경우에는 新規性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法第 165號, 9條)
 - 實用新案 特許에 關하여는 지엽적인 新規性 基準

◎ 필리핀 ◎

■ 工業所有權 ■

(a) 現行國內法

(i) 發明

- 共和國法第165號, 1947年 6月 20日; 特許廳設置, 特許關係 諸般問題을 規定 또는 그를 위한 토대로 사용, 1951年 6月 9日 共和國法 第637號, 1983年 6月 13日 共和國法 第894號 및 1977年 12月 14日 大統領令 第721號 및 第1263號에 의거 改正됨.
 - 改正是 되었지만 特許廳以前의 特許에 대한 施行規則.
 - 大統領令 第1263號에 의거하여 1978年 5月 8日 大統領 指示書第678號

(ii) 意匠

發明과 同一; (i)項 參照

(iii) 特徵 表示

- 1947年 6月 20日에 제정된 共和國法 第166號는 共和國法第638號(1951. 6. 11), 第681號(1952. 5. 9) 및 第865號(1953. 6. 16)에 의해 改正되어 商標·商號·서비스標에 대한 登錄 및 保護를 包含하고 있으며 不正競爭 및 虛偽表示에 관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 改正是 되었지만 菲律賓 特許廳以前의 商標에 대한 施行規則

- 共和國法 第623號(1951. 6. 5制定); 檢印箇명, 상자, 통 및 기타 유사한 容器들의 使用에 대하여 規定

(iv) 其他 工業所有權

商標에 관한 法律(法第166號, 上記(iii)項 參照)은 또

이 適用된다. 어떤 實用新案이 特許出願以前에 필리핀에서 公知되었거나 使用되어진 경우, 또는 國內에 회람된 公報에 게재된 경우, 또는 이미 公知·使用 또는 게재된 다른 實用新案과 類似한 경우에는 新規性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法第165號, 55(3)條; 規則 134條)

發明 단계(進歩性)

- 特許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發明은 發明性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實用新案의 경우에는 特許要件의 發明性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實用新案은 發明단계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法第165號 55(1)條; 規則 133條)

產業上 利用可能性

- 發明은 利用可能한 機械, 製造物 또는 物質 또는 方法과 關聯되어야만 한다. 어떤 發明을 具體化하지 않는 思想·原理 또는 理論이나 商業的 生產品의 製造나 改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方法은 特許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7 및 8條 規則 31,32條)

- 實用新案은 實際의 으로 有用한 工具나 產業的 生產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法第165號, 55(1)條; 規則 133條)

(iii) 保護받지 못하는 경우

特別히 규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公共秩序·善良風俗 또는 公衆의 衛生이나 복지에 反하는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8條; 規則32條)

(iv) 海外에서 획득한 권리나 出願의 效果

필리핀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認定하는 當事國에서 同一發明을 出願한 者가 필리핀에 접수한 發明特許 또는 實用新案에 관한 出願은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필리핀에 出願한 날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同等한 効力を 가진다. 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는 要件은 다음과 같다.

- 그 出願이 外國에서 出願한 날로부터 12個月以内에 행하여져야 되며, 그 出願의 英文번역본은 필리핀에서 出願한 날로부터 6個月以内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필리핀에서 出願한 날로부터 1年以上前에 世界의 어느 地域에서 油印된 公報에 게재되었거나, 이미 特許받은 發明 (또는 出願에 앞서 1年以上)을 그 나라에서 공공연히 使用 또는 販賣된 發明에 대해서는 特許를 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15 및 55(1)條 規則 56條)

(v) 公開의 範圍

明細書에는 發明의 目的 및 性質에 관한 說明,

그 發明이 屬하는 技術이나 科學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을 程度로 完全하고 명료하고, 간단·정확한 形식으로 그 發明에 대한 세부적인 解釋을 包含하여야 한다.

發明者가 發明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한 최적의 方式이 공개된다. (法第165號, 14(b) 및 (d)條, 規則62(a) 및 (b)項)

- 特許 또는 特許의 어려운 權利主張도 明細書에 要求된 公開內容으로 암시하지 않으면 未消滅수도 있다. (法第165號 28(b)條; 規則 248條)

(vi) 許與 節次; 公開

出願을 하면 形式 및 內容審查를 받게되고, 先技術調查도 수행된다. 出願이 適合하다고 決定되면, 特許가 發給되고 許與 받은 特許의 圖面 및 權利를 包含한 事項이 公報에 게재된다. (法第165號, 6, 16, 18, 및 55(1)條; 規則 87 및 144條)

* 出願者は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 發明이 公共 봉사의 측면에서 특히 重要한 것일 때에는 그의 特許出願에 따라 優先審查處理를 받을 수 있다. (施行令 1—15條, 規則 55—A條)

(vii) 獨占權의 範圍

- 特許權자는 特許받은 物品이나 製品을 開發, 製作, 使用 및 販賣하거나 產業 또는 商業的 目的으로 特許받은 方法을 使用하는 獨占權을 가진다. 特許權者の 허락을 받지 못한 者에 의한 이러한 행위의 실시는 特許에 대한 侵害로 본다. (法第165號, 37條)

- 營利目的이 아닌 研究, 實驗 또는 教育目的으로 特許發明을 製作 또는 使用한 경우에는 侵害로 간주하지 않는다. (法第165號, 38條)

- 어떠한 特許라도 필리핀 영역내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들어온 外國의 선박, 용기,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 내에서 이러한 發明의 使用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使用은 侵害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發明의 使用이 上記한 대상 자체 目的으로만 사용되어야하며 필리핀에서의 販賣用 또는 필리핀으로 부터輸出用의 물품 製造를 위해 使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法第165號, 39條)

- 發明者로부터 그 發明을 賣入하거나 획득한 者, 그의 法定代理人이나 위임받은 者 또는 그들이 지식이나 협조로 새로운 發明의 考案이나 其他 다른 特許받을 만한 物品을 제작한 者는 그것을 위해 出願하기 앞서 아무런 책임 없이 賣入, 획득 또는 製作한 特定 物品을 使用하거나 販賣할 權利를 가진다(法第 165號,

■ 아시아地域 工業所有權制度 ■

40條)

· 政府는 어떠한 特許發明일지라도 政府의 目的을 위해 언제라도 使用할 수 있고 政府에 의해서나 또는 政府의 目的을 위한 그 發明의 製造 또는 使用은 侵害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特許權者는 그 發明의 使用에 대한 대가로 合당한 保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法第165號, 41條)

(viii) 存續期間 및 維持

存續期間

· 發明特許; 特許를 發給받은 날로 부터 17年間(法第165號, 21條; 規則 146條)

· 實用新案 特許; 許與日로부터 5年間 (法第165號, 58條; 規則 148條)

維持

· 發明特許의 維持를 위하여 特許를 發給받은 후 4년째부터 每年 特許料를 내야한다. 만일 特許料를 규정된 기한내에, 또는 과도한 料金으로 인정되어 6個月間의 연장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特許가 未消된다. 特許料 未納付로 未消된 特許는 未納된 날로부터 2年以內에 特許料를 納付하므로써 復權될 수도 있다. (法第165號, 21, 22 및 23條; 規則 16, 152, 153, 154 및 155條)

· 實用新案特許의 경우에는 特許料를 내지 않는다. 特許存續期間은 5年씩 두번 연속하여 연장될수 있는데 그 實用新案이 필리핀내에서 商業的 또는 產業的으로 使用되는 것이 증명되거나, 非使用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165號, 55(5) 및 58條; 規則 149條)

(ix) 實施義務; 非自發的인 實施權 許與 및 其他 다른 實施權 許與

實施義務

實用新案特許는 그 存續期間의 延長을 위해서는 非使用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產業의 또는 商業의으로 使用되어야만 한다. (法第165號, 58條; 規則149條)

未實施權 위한 強制實施權 許與

· 發明特許 또는 實用新案特許의 訸與日로부터 2年이 경과한 뒤에는 다음의 理由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特許에 대해 強制實施權을 託與받을 수 있다.

—그 特許發明이 實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理由없이 필리핀의 商業영역내에서 實施되고 있지 않을 때.

—필리핀내의 該當特許物品의 需要가 2年의 期間동

안 적당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特許후 2년동안 特許權者가 實施權許與를 거절했을 경우 또는 特許權者가 제시한 條件에 의해 필리핀에서 새로운 거래나 產業의 설립이 방해받거나 來 또는 產業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가 그 特許物品의 輸入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제한되는 경우.

—食品 또는 醫藥品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으로 使用될 수 있는 製造物이나 物質에 관련된 特許 또는 公共의 衛生 및 安全에 필요한 特許. (法第165號 34(1)條; 規則 239, 240 및 241條)

公益部門의 強制實施權 託與

NEDA(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은 國家防衛, 經濟 및 公衆衛生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特許받은 物件이나 方法에 대해서 또는 그 범주내에서 언제라도 強制實施權을 託與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特許許與日로 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않은 때라도 가능하다) 이와 연관하여, 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工業計劃에 포함된 物品, 物質 및 方法은 國家防衛, 經濟 및 公衆衛生에 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法第165號 34-A 및 34-B(1)條)

從屬特許의 強制實施權 託與

特許로 保護받는 發明이 그 보다 앞선 特許나 出願 또는 우선권주장이 받아들여진 出願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고는 實施될 수 없을 때 그 發明이 그보다 앞선 特許發明과 다른 產業의 目的을 추구하고 있거나 그 分野에서 주목할만한 기술적진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發明의 實施에 必要한 정도로 強制實施權이 託與될 수 있다. (法第 165號, 34-C條)

強制實施權 託與에 關한 一般 規定

· 強制實施權은 獨占排他的인 것은 아니지만, 實施權者는 새로운 強制實施權許與를 위한 申請에 對해서는異議를 提起할 수는 있다. 強制實施權은 託與에 관련된 兩測에 義務와 제약이 따르며, 適當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託與받는다. (法第 165號, 35-B條)

· 實施權者로서 特許를 善意로 實施하는 者는 侵害의 어떠한 책임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特許間 分爭의 존재가 그 發明을 實施하는 實施權者的 權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명령이나 절차도 이러한 權利를 간섭하지 못한다. (法第165號, 35-E條)

政府에 의한 實施

필리핀 政府는 政府의 目的으로 언제 어느 것이든지 特許發明을 實施할 수 있다. 政府의 目的을 위하여 政府에 의하여 또는 政府用으로 發明을 製造 또는 使用하는 것은 特許를 침해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特許權者는 그 發明의 實施의 代價로 合當한 보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法第165號, 41條)

(x) 讓渡 및 實施權許與

讓 渡

• 特許나 發明(實用新案 包含)과 關聯된 權利는 상속 또는 유산으로 讓渡나 移轉될 수 있다. 讓渡는 分割되지 않은 全體로 또는 特徵지워진 영역별로서만 可

能하다. (法第165號, 50 및 51條)

• 讓渡는 書面으로 해야하며 公證人이나 그 밖에 다른 인정된 관리앞에서 認證을 받아야만 한다. 讓渡가 되면 登錄原簿에 記錄되고 記錄事項은 官報에 게재된다. 만일 讓渡이후 3個月以内에 또는 계속적인 구매나 저당에 앞서 特許廳에 登錄하지 않으면 어떠한 購賣者나 저당권자에 대하여 實効를 발휘하지 못한다. (法第165號, 52 및 53條)

實施權許與

特許의 實施權許與도 登錄原簿에 記錄될 수 있다. (法第165號, 53條)

(xi) 職務發明: 特別한 標定이 없다. <계속>

本會主要實行業務

11月의 메모

2日 ◇ 意匠公報 第498號 發刊

4日 ◇ 第57回 工業所有權研修講座(9日까지)

◇ 實用新案公報 第742號 發刊

6日 ◇ 特許公報 第1117號 發刊

7日 ◇ 第527回 이週의 優秀發明 「鍋管온수보일러」選定 並 도의회

9日 ◇ 第21回 發明教室

◇ 意匠公報 第499號 發刊

◇ 工業所有權 登錄目錄(85-9) 發刊

13日 ◇ 第56回 機械·金屬部門 간 담회

◇ 特許公報 第1118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743號 發刊

15日 ◇ 審查一般基準 發刊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68號 發刊

16日 ◇ 유힐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

출국

◇ 第528回 이週의 優秀發明 「감귤류 수업을 주제로 한 차의 제법」選定 並도의회

◇ 意匠公報 第500號 發刊

18日 ◇ 商標公報 第288號 發刊

19日 ◇ 商標公報 第289號 發刊

20日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69號 發刊

◇ 工業所有權 判例(85-10) 發刊

◇ 생신동록 상표집(5·6집) 發刊

◇ 商標公報 第290號 發刊

21日 ◇ 實用新案公報 第744號 發刊

◇ 意匠公報 第501號 發刊

◇ 工業所有權 國際세미나 及 개인사초청 오찬간담회

22日 ◇ 特許公報 第1119號 發刊

◇ 第529回 이週의 優秀發明 「카펫트와 라디오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스위치」

「절환회로」選定 並도의회

25日 ◇ 實用新案公報 第745號 發刊

◇ 意匠公報 第502號 發刊

◇ 工業所有權 巡迴 研修講座(釜山·大邱) 및 企業特許管理啓導(28日까지)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70號 發刊

26日 ◇ 意匠公報 第503號 發刊

◇ 特許公報 第1120號 發刊

27日 ◇ 意匠公報 第504號 發刊

28日 ◇ 意匠公報 第505號 發刊

◇ 明振興委員會 개최

29日 ◇ 日本工業所有權 專門家 초청강연회

◇ 유힐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 到來

◇ 第530回 이週의 優秀發明 「벽걸이용 휴지통」選定 並도의회

30日 ◇ 意匠公報 第506號 發刊